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2322 취득세 등 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84,924,000원, 농어촌특별세 6,066,000원, 지방교육세 4,852,80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2018. 8. 23.로 기재하였으나 이와 같이 정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의경매절차([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B)에서 2015. 3. 17. 아래 표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033,0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1]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redacted]도 [redacted]시 C	D	임야	46,645.00	
2	[redacted]도 [redacted]시 C	E	임야	10,767.00	
3	[redacted]도 [redacted]시 C	F	도로	413.00	
4	[redacted]도 [redacted]시 C	G	도로	2,762.00	
5	[redacted]도 [redacted]시 C	H	임야	4,755.00	
6	[redacted]도 [redacted]시 C	I	임야	506.00	
7	[redacted]도 [redacted]시 C	J	임야	267.00	
소계				66,115.00	

나. 원고는 2015. 3. 17.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등으로 아래 표 2와 같은 금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4%를 적용하였다.

[표2]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당초 신고: 승계취득)

구분(세목)	과세표준	세율	지방세액	비고
취득세	3,033,000,000	4.00%	121,320,000	
농어촌특별세	60,660,000	10.00%	6,066,000	
지방교육세	60,660,000	20.00%	12,132,000	
소계			139,518,000	

다. 원고는 2018. 7. 4. 피고에게 앞서 납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아래 표 3의 금액으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2.8%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표3]

취득세 등 경정청구 내역(경정청구: 원시취득)

구분(세목)	과세표준	세율	지방세액	비고
취득세	3,033,000,000	2.80%	84,924,000	
농어촌특별세	60,660,000	10.00%	6,066,000	
지방교육세	24,264,000	20.00%	4,852,800	
소계			95,842,800	

라. 피고는 2018. 8. 21. 원고들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함을 통지하였고, 그 사유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는 것이다(이 경정청구의 거부를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 나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에 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원고의 취득세 등은 위 세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경매는 매매의 일종으로서 그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고,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36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41 판결 등),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관련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